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청렴특별도 경북

- 독도재단 -
2026년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26. 10.

경상북도
(감 사 관)

목 차

Ⅰ. 감사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실시 과정 ····· 1
3. 감사결과 처리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감사중점 분야 ····· 2

1. 감사대상기관 현황 ····· 2
2. 감사중점 분야 ····· 3

Ⅲ. 감사결과 ····· 3

1. 감사결과 총괄 ····· 3
2.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요약) ····· 4
   1)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 4
   2) 징계관련 규정 정비 소홀 ····· 5
   3) 수탁사업 재위탁 부적정 ····· 6
   4) 기록물 관리 업무 소홀 ····· 6
   5)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관리 부적정 ····· 7
   6) 지출업무 부적정 ····· 8
   7)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 8

※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독도재단은 「민법」,「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전 종합감사는 2023. 8. 28.부터 9. 1.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 경상북도는 독도재단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실시 과정

○ 감사준비를 위해 예산서·결산서, 언론보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타 시도 등 유사기관 감사보고서 등을 수집 및 분석하였고, 2026. 8. 24.부터 같은 해 8. 28.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2023. 8월부터 감사시작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 및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결과 처리

○ 경상북도는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독도재단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받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6. 10. 26. 감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및 감사중점 분야

1 감사대상기관 현황

□ 조직 및 인력

○ 정원 14, 현원 11명 ※ 기간제 2명 별도



□ 주요사업

○ 소기업 ·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연구사업, 내외국인 대상 울릉도·독도 탐방 지원 사업, 울릉도·독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문화 및 콘텐츠산업 진흥 사업, 해양교육·문화 사업,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생물 보존 사업

□ 예산현황

○ 2026년도 예산은 2,280백만 원이며 수입예산은 도 출연금 920백만 원, 대행사업비 860백만 원, 전년도반환금 410백만 원 등이고
지출예산은 일반관리비 1,010백만 원, 대행사업비 860백만 원 등이다.

< 세입 및 세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2023	2024	2025	2026	지 출	2023	2024	2025	2026
계	2,891	2,541	2,827	2,280	계	2,891	2,541	2,827	2,280
도 출연금	1,100	1,100	1,172	920	일반관리비	1,223	1,202	1,278	1,010
대행사업비	1,600	1,279	1,300	860	대행사업비	1,600	1,279	1,300	860
기타보조금	60	60	120	-	보조사업	60	60	120	-
영업외수익		90	80	60	영업외비용	0	-	127	410
순세계잉여금	131	12	28	30	자산취득비	8	-	2	-
전년도반환금			127	410					

2 감사중점 분야

□ 설립목적 등

○ 독도재단은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5. 18. 설립되었다.

□ 감사중점 분야 선정

○ 위탁사업을 중점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채용 및 승진, 계약체결, 회계처리, 복무관리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다.

○ 규정(규칙)이 근로기준법, 지방출자출연법, 지침 등 관계 제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감사결과 아래와 같이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 지적사항 현황 >

(단위 : 건, 명, 천 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감액	환급
7	5	2	-	4	-	4	-	799	799	-	-

2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1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 **(병역 미필자에 대한 응시 부당 제한)** 「고용정책기본법」상 병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아니되는데 채용 공고 응시 자격 요건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부당 제한(총 5회)

○ **(채용 관련 내부 규정 정비 소홀)** 채용공고에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안내하였으나 공고문을 포함하여 재단 자체 규정과 채용 계획에는 대상자별 가산점 부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총 6회)

-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예비 합격자 세부 내용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은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나 자체 규정 및 공고문(총 5회)에는 세부기준이 없음

○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불명확)** 재단 인사규정의 연구직 직급별 응시 자격 기준은 채용분야가 ’해양, 지리, 법학 등’으로 명시되어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채용분야 및 직무경력의 인정범위가 불명확

- 또한 ’기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인정기준과 판단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응시자격 심사시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재단은 채용분야 및 직무경력의 인정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6급 경력직 1명 채용을 채용하기위해 채용직무는 ’독도 관련 교육, 연구 등 재단에서 지정하는 업무’, 자격기준은 인사규정의 연구직 6급의 자격기준으로 2025. 7. 22. 공고

- 재단은 응시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1차(서류전형) 응시자 7명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2025. 8. 20. 서류전형 위원을 ○○ 담당 부장과 ○○ 담당자 내부위원으로 정하고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

- 그 결과 응시자 ○○○은 채용직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력이 인정되어 서류전형 적격자로 결정되었고, 이후 면접시험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2025. 9. 8. 6급(차장)으로 최종 임용됨

▸ **(행정상) 시정**(가산점 및 예비 합격자 기준 등 채용 관련 사항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고, 채용공고 시 이를 공개, 경력직 채용 시 채용예정 직위 및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등 응시자격 기준과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자체 규정에 명확히 반영)

▸ **(신분상) 관련자 훈계**(재단 규정상 경고)

2 징계관련 규정 정비 소홀 (시정)

○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행안부 지침상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 재단 「인사규정」에는 강등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 동안 보수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하고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1~3개월)동안 보수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 **(징계 기준 양정에 관한 사항)** 행안부 지침상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 재단 「인사규정」을 점검한 결과 음주운전(자전거 등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은닉·방조 처벌기준) 등의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

▸ **(행정상) 시정**(강등 및 정직, 음주운전 등의 징계기준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

▸ **(신분상) 해당없음**

3 수탁사업 재위탁 부적정 (주의)

○ 재단은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중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재단은 ○○○○○○○로부터 위탁받은 7개 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재단 수수료를 제외한 위탁사업비 전액을 다른 법인·단체에 교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비를 정산받는 등 위탁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독도재단 담당자 ◎◎◎급 ◇◇◇)는 독도재단이 재위탁 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한 이후, 2개 사업에 대해 제3자 사업수행 승인을 요청하자 이를 사후 승인함

▸ **(행정상) 주의**(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관계 법규정 및 위·수탁 협약에서 정한 재위탁 범위와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위탁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공식 문서로 관리)

▸ **(신분상) 해당없음**

4 기록물 관리 업무 소홀 (시정)

○ **(기록물 관리 기준 부재 및 담당자 미지정)** 자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없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 **(법령상의 절차 없이 기록물 자체 폐기)** 재단에서는 문서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2024. 3. 18. 보존기간이 5년이 넘은 문서(2012 ~ 2016 생산·접수) 3,519건을 법령상의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파쇄함

▸ **(행정상) 시정**(기록물 관리 지침 등 마련 및 기록물 관리 책임자 지정)
▸ **(신분상) 해당없음**

5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관리 부적정 (시정)

○ **(외부강의 신고서 미제출 부적정)** 재단 소속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2024년 7월 22일 상반기 외부강의 신고 자체 점검 시 이를 확인함

○ **(개인적인 외부 활동을 공무상 출장으로 부적정 처리)** ▼▼▼▼부♤♤♤은 ☆☆도청 '△△△ 운영 및 □□□□□ 제작 용역 제안서 평가' 등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 개인 자격으로 직접 지원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공무상 출장을 사용하여 참석함

- 그 결과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되어 출장여비, 연가를 모두 사용한 2024년의 경우 결근 처리 시 봉급, 2025년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상) 시정**(과다 지급된 출장여비(214,300원), 봉급(88,620원), 연가보상비(185,430원)의 합계 488,350원을 회수, 임직원 외부활동 시 적정한 복무 처리 철저)
▸ **(신분상) 관련자 훈계**(재단 규정상 경고)

⑥ 지출업무 부적정 (주의)

○ **(언론광고비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재단에서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사용하여 언론광고비(홍보비) 예산을 집행함

○ **(교육·홍보물 제작비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재단에서는 '독도 △△△△ 교육 홍보용 물품 제작(리플릿)'을 추진하면서 교육·홍보 등에 활용되는 유인물 제작비 6,000천 원(1건)을 연구용역비로 집행함

▸ **(행정상) 주의**(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

▸ **(신분상) 해당없음**

⑦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 2024. 6. 28. ~ 6. 30. 3일간 2024년 ◇◇ □□ ☆☆ 공동 학술세미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무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 △△△는 당초 승인된 공무 국외출장의 종료일인 2024. 6. 30.에 귀국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별도의 일정 변경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같은 해 7. 2.까지 일본 현지에 체류한 후 귀국함

○ ○○○○○ △△△는 개인적인 사유로 귀국일을 2024. 6. 30.에서 같은 해 7. 2.로 변경하여 실제 탑승한 귀국편 및 항공운임이 당초 예약내역과 달라졌는데도, 변경된 실제 항공운임으로 정산 신청을 하지 않고 실제 부담한 항공운임보다 51,900원을 초과한 여비를 부당 수령함

▸ **(행정상) 시정**(부당하게 수령한 항공운임 51,900원과 5배를 가산한 금액인 259,500원을 합산한 311,400원을 관련 기준에 따라 환수 조치)

▸ **(신분상) 관련자 훈계**(재단 규정상 경고)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독도재단 –

2026. 10.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처분요구일람표

1.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 1

2. 징계관련 규정 정비 소홀 (시정) ····· 8

3. 수탁사업 재위탁 부적정 (주의) ····· 10

4. 기록물 관리 업무 소홀 (시정) ····· 13

5.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관리 부적정 (시정) ····· 16

6. 지출업무 부적정 (주의) ····· 21

7. 공무 국외출장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 24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표 1]과 같이 총 7차례의 채용공고 등을 하여 직원 9명을 채용하였다.

[표 1] 독도재단 직원 채용현황

“생략”

2. 병역 미필자에 대한 응시 부당 제한

가.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 직원의 인사, 1 신규채용 및 재단 「채용규정」제3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병역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표 1]과 같이 2025. 2. 25. 사무직 5급 채용 공고를 비롯하여 총 5차례 직원 채용을 실시하면서, 공고문의 응시자격 요건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규정하여 병역 미필자의 응시를 제한하였다.

그 결과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채용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3. 채용 관련 내부 규정 정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1 신규채용 및 3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공고 내용에 가점 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4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예비합격자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내부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가산점 부여, 예비합격자 운영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자체 인사규정에 명확히 정하고, 모든 채용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기준과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유효기간 등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표 1]과 같이 2025. 7. 21. 연구직 6급 채용 공고를 비롯하여 총 6차례에 걸쳐 직원 채용을 실시하면서 공고문에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안내하였으나 공고문을 포함하여 재단 자체 규정과 채용 계획에는 대상자별 가산점 부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재단은 [표 1]과 같이 2025. 2. 25. 사무직 5급 채용 공고를 비롯하여 총 5차례의 직원 채용을 실시하면서 공고문에 예비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하였으나 공고문을 포함하여 재단 자체 규정에는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유효기간 등의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가산점 및 예비 합격자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 및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었다.

4.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불명확

가.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1 신규 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지침 Ⅲ. 직원의 인사, 4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시험위원은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가 필요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경력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은 해당 직위·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자격증, 경력기간 등 객관적인 적격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사할 수 있으나, 지원자의 경력이 채용 직무에 적합한지, 직무수행 능력이 충분한지 등을 재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 「직제규정」제6조 및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재단의 직원은 일반사무직, 연구직으로 구성하고 연구직 6급의 자격기준은 [표 2]와 같이 채용관련

분야(해양, 지리, 영사, 법학 등) 4년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표 2] 연구직 6급 자격기준

직급 (직위)	자격기준
6급 (차장)	・ 채용관련분야(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 4년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채용관련분야(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채용관련분야(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에서 석사학위 취득한 후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채용관련분야(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에서 학사학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기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런데 채용관련분야가 '해양, 지리, 영사, 법학 등'으로 되어 있어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채용 분야 및 직무 경력의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고 '기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인정기준과 판단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응시자격 심사시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재단은 채용분야 및 직무 경력의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6급 직원(경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해 2025. 7. 7. 채용 계획을 수립 시 채용분야는 '독도 관련 교육, 연구 등 재단에서 지정하는 업무'로 하고 자격기준은 인사규정의 연구직 6급의 자격기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시험방법은 1차(서류전형)으로 인사규정 상 연구직 6급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2차(면접전형)으로 면접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과와 2025. 7. 10. 채용계획 협의 후 [표 3]와 같이 2025. △. △△. 공고[1]하였다.

1) 2025. ▲. ▲▲. 최초 공고하였으나 재단 인사규정 및 도 협의내용과 동일하게 응시자격기준의 채용관련분야를 '역사'에서 '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으로 변경하고 공고문에 별도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삭제하고 2025. △. △△. 변경 공고. 2025. △. △△.공고 후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아 2025. ◆. ◆. 재공고

[표 3] 2025. △. △△. 독도재단 직원(경력) 채용 공고문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위	직급	선발예정인원	직무내용
차장	6급	1명	・독도 관련 교육, 연구 등 재단에서 지정하는 업무

□ 응시자격

직급 (직위)	자격기준
6급 (차장)	・ 채용관련분야(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 4년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채용관련분야(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채용관련분야(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에서 석사학위 취득한 후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채용관련분야(해양, 지리, 역사, 법학 등)에서 학사학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기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런데 재단은 응시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자의 경력이 채용 직무에 적합한지, 직무수행 능력이 충분한지 등 재량적으로 평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차(서류전형) 응시자 7명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2025.8.20. 서류전형 위원을 ○○담당 부장(△급 ◇◇◇)과 ○○ 담당자(☆급 ♣♣♣)으로 정하고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 ◆◆◆은 채용직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력이 인정[2]되어 서류전형 적격자로 결정되었고, 이후 면접시험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2025. ☆. ☆. 6급으로 최종 임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독도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인사관련 제규정을 수시로 확인하여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사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생략”

조치할 사항 **독도재단 이사장**은

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병역 이행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불합리한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채용공고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가산점 및 예비 합격자 기준 등 채용 관련 사항을 자체규정에 반영하고, 채용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 채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경력직 채용 시 채용예정 직위 및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응시자격 기준과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자체 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④ 아래 관련자 AAA, BBB은 **훈계**(재단 규정상 경고)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관련 규정 정비 소홀**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 개요

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징계와 관련하여 재단 「인사규정」으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Ⅳ. 투명한 윤리경영, ⑵ 징계 등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음주운전 등의 징계기준이 자체규정에 반영되도록 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중 재단 「인사규정」을 점검한 결과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강등은 1직급 아래로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음주운전(자전거 등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은닉·방조 처벌기준)과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이 관련 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재단은 강등 및 정직 처분 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게 운영되어 징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독도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체 인사규정의 징계기준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부합되도록 즉시 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독도재단 이사장은

강등 및 정직, 음주운전 등의 징계기준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탁사업 재위탁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 ♤♤♤♤♤♤♤
내 용	

1. 업무 개요

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경상북도 ♤♤♤♤♤♤과로부터 '□□·◇◇◇◇ 및 ◎◎◎ 독도탐방' 등 독도와 관련된 탐방 사업 및 문화 행사 사업 등을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3)]」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고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3) 2022. 1. 13. 시행. 2024. 1. 1.부터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적용함.

있다고 되어 있다.

「2023년도 경상북도 독도정책 관련 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사무의 일부만을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사무의 일부만을 재위탁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 및 ◎◎◎ 독도탐방'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총사업비 320,000천 원 중 재단 수수료 23,500천 원을 제외한 296,500천 원을 다른 법인·단체 등에 교부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4] 없이 위탁사무의 전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산받았다.

[표] 위탁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위탁기관	예산	집 행		도 승 인 여 부	재 단 담당자
						위탁비	재 단 수 수 료		
	합계				320,000	296,500	23,500		
1	2023	□□·◇◇◇◇ 및 ◎◎◎ 독도탐방	5~10월	▼▼▼▼▼	100,000	92,600	7,400	사후 승인	○○○
2	2023	△△△ ☆☆☆ 독도사랑 한마당	5~9월	●●●●●	20,000	18,600	1,400	부	○○○

4) 재단에서는 '□□·◇◇◇◇ 및 ◎◎◎ 독도탐방' 사업과 관련하여 2023. 6. 5. ▼▼▼▼▼에 사업비 92,600천 원을 교부한 후인 2023. 8. 9. ♤♤♤♤♤♤과에 제3자 사업수행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과에서는 2023. 8. 18. 이를 사후 승인함. '♤♤♤♤ 기념행사' 사업의 경우에도 2023. 8. 4. ■■■■■에 사업비 92,600천 원을 교부한 후인 2023. 11. 10.에서야 제3자 사업수행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과에서는 2023. 11. 15. 이를 사후 승인함.

연번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위탁기관	예산	집 행		도 승 인 여 부	재 단 담당자
						위탁비	재 단 수 수 료		
3	2023	◆◆◆◆ 페스티벌	4~12월	♣♣♣♣♣	10,000	9,300	700	부	☆☆☆
4	2023	독도●●●● 운영지원	8~12월	♠♠♠♠♠	30,000	27,800	2,200	부	▽▽▽
5	2023	독도♥♥♥공모전 (격년제)	4~12월	◆◆◆◆◆	30,000	27,800	2,200	부	☆☆☆
6	2023	독도♣♣연구회 지원	4~12월	◆◆◆◆◆	30,000	27,800	2,200	부	●●●
7	2023	♤♤♤♤ 기념행사	1~12월	■■■■■	100,000	92,600	7,400	사후 승인	♥♥♥

※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관계 규정 및 협약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탁사업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독도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위탁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협약서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협의 사항을 공식 문서로 관리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위탁사업 추진 시 수탁기관이 관계 법규정 및 위·수탁 협약에서 정한 재위탁 범위와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독도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관계 법규정 및 위·수탁 협약에서 정한 재위탁 범위와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위탁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공식 문서로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록물 관리 업무 소홀**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개요

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생산·접수하는 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고 한다) 및 「문서관리 규정」(이하 '재단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보존·폐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록물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기관에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의견 조회,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절차 등을 자체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재단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보존·이관·폐기 등에 관한 자체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기록물 관리 담당자 또는 책임자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는 등 기록물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2024. 3. 18. 이러한 절차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접수한 기록물 3,519건을 임의로 파쇄하였다.

그 결과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와 행정적·증거적·역사적 가치에 따른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폐기 보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기록물이 폐기되는 등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정한 보존·폐기를 위한 업무처리가 부적정

하게 이루어졌다.

관계기관 의견 독도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독도재단 이사장**은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기록물관리 담당자 및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생산부서 의견 조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기록물이 임의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개요

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외부강의 등에 따른 부당한 사례금 수수 및 직무수행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독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및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2. 외부강의 신고서 미제출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0조와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의 대가로서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재단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재단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고,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재단에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외부활동의 직무관련성, 사례금 수수의 적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재단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부 ◇◇◇는 외부강의를 다녀온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단에서는 신고 의무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4년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확인하였다.

[표 1] 외부강의 신고서 미제출 내역

(단위 : 원)

소 속	성 명 (직 급)	활동일자	신고일자	활동내역 (요청기관)	사례금
○○○○부	◇◇◇ (◎◎)	2024.05.28	미신고	♤♤ △△△△ 학술세미나 토론 ((○○○○○연구원)	300,000

※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공무상 출장으로 부적정 처리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단 「여비규정」 제1조에 따르면 재단의 임·직원이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재단의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8조 및 「보수규정」제14조에 따르면 결근 시 그 결근 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 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하고, 연가보상비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임직원이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출장 처리하여야 하고, 「여비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적 외부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한 경우는 「여비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부 □□□은 [표 2]과 같이 △△도청의 '◎◎ 운영 및 ♤♤♤♤♤ 제작 용역 제안서 평가' 등 외부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에 개인적으로 지원·선정되어 평가에 참석하였다.

[표 2] 개인적 외부활동을 공무상 출장으로 부적정 처리한 내역

"생략"

그러나 해당 평가활동은 외부기관의 요청이나 재단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개인적인 외부활동으로 재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연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은 해당 평가활동을 공무상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여비 합계 214,3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연가 대신 출장으로 처리하여 연가가 차감[5]되지 않음에 따라, 2024년에는 연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출장 처리한 2일분의 봉급 88,620원[6]이 과다 지급되었고, 2025년에는 잔여 연가일수를 실제 3일보다 2일 많은 5일로 산정하여 연가보상비 185,430원[7]이 과다 지급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독도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출장비, 봉급액, 연가보상비를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재단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강의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독도재단 이사장**은

①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서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시고 개인적인 외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직무 관련성, 기관 대표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상 출장 또는 연가 등으로 적정하게 복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2024년도는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연가 차감이 불가함
6) [2024년 월 기본급 2,060,740 ÷ 31(일)] × 2/3 × 2일(결근) = 88,620원
7) 2025년 □□□ 대리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463,590원(5일분) ÷ 5일 × 2일 = 185,430원

② 공무상 출장으로 볼 수 없는 개인적인 외부기관 제안서 평가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출장여비(214,300원), 봉급액(88,620원), 연가보상비(185,430원) 합계 488,35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아래 관련자 CCC은 **훈계**(재단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출업무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1. 업무개요

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독도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홍보와 교육 등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는 광고선전비로 예산편성하고 인쇄물·유인물의 제작비는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을 위한 인쇄물·유인물의 제작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료는 광고선전비로, 일반적인 인쇄물·유인물 제작비는 사무관리비로, 행사 운영을 위한 인쇄물·유인물 제작비는 행사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중 재단의 언론홍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재단은 [표 1]과 같이 '독도 ▲▲▲▲ 강화를 위한 언론광고비 지출' 등 6건, 총 53,000천 원의 언론광고비를 광고선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집행하였다

[표 1] 언론광고비(홍보비) 집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적 요	금 액	집행과목
합 계		53,000,000	
2023.11.06	독도 ▲▲▲▲ 강화를 위한 언론광고비 지출	5,500,000	사무관리비
2024.07.19	제●●회 독도◆◆◆◆ 언론홍보비 집행	10,000,000	행사운영비
2024.07.26	언론홍보비 지출	13,000,000	사무관리비
2024.08.08	2024 □□·△△△△ 및 ◎◎◎ 독도탐방 개최 언론홍보비 집행	13,000,000	사무관리비
2024.11.20	2024 ☆☆☆☆ 기념행사 개최 언론홍보비 집행	10,400,000	사무관리비
2025.12.24	♥♥♥ 전광판 독도 홍보영상 송출 공고료	1,100,000	사무관리비

※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재단은 '독도 ◎◎◎◎ 교육 홍보용 물품(리플릿) 제작'에 소요된 6,000천 원을 2023. 12. 22.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였다.

그 결과 총 7건, 59,000천 원의 예산이 지출예산 과목의 성질별 분류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집행되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독도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직원을 교육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독도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무 국외출장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1. 업무개요

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 「공무국외출장 규정」(이하 '국외출장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의 허가[8]를 받아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장자에게 재단 「여비 규정」에 따라 항공운임 등 국외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외출장 규정 제3조,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및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라 출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 「여비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국외여행 시의 여비는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와 국외 여비 기준표에 따라 실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8) 공무 국외출장 시 재단의 임원은 부이사장(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이 허가하고, 직원은 사무총장이 허가함

또한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 국외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라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재단은 소속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소속 직원 3명[9]이 2024. 6. 28.부터 6. 30.까지 3일간 ♣♣ ◇◇에서 개최되는 '2024년 ♠♠ 공동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2024. 6. 10. 관련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위 출장자 3명 중 2명은 승인된 출장계획대로 2024. 6. 30. 공무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부 ☆급 ♤♤♤는 공무국외출장 심의 완료일 이후인 2024. 6. 24. 개인적인 사유로 2024. 7. 1.부터 7. 2.까지 2일간의 대체휴무를 신청·

9) 독도재단 공무 국외출장자 ○○○, ♤♤♤, ◇◇◇

승인받아, 당초 귀국 예정일인 2024. 6. 30.이 아닌 7. 2.까지 ♣♣ 현지에 체류한 후 귀국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 ♤♤♤는 여비 지출 담당자로서 자신이 당초 승인받은 귀국일이 2024. 6. 30.에서 2024. 7. 2.로 변경되었고 실제 이용한 항공편 및 항공운임이 당초 예약내역과 달라져 기 지급받은 항공운임이 실제 항공운임을 초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지출금액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 ♤♤♤에게 과다 지급된 항공운임 51,900원이 정산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독도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자에게 과다 지급된 국외여비 및 가산징수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공무 국외출장 여비 정산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독도재단 이사장**은

① ○○○○부 ♤♤♤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여비 51,900원과 가산징수액 259,500원을 합산한 금액인 311,4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관련자 DDD는 **훈계**(재단 규정상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